

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712호

2019년 5월 10일 (금)

차 례

조 례

- 파주시 조례 제1494호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파주시 조례 제1495호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파주시 조례 제1496호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파주시 조례 제1497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파주시 조례 제1498호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파주시 조례 제1499호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28
- 파주시 조례 제1500호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 파주시 조례 제1501호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48
- 파주시 조례 제1502호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2

규 칙

- 파주시 규칙 제657호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6
- 파주시 규칙 제65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4
- 파주시 규칙 제659호 파주시 물가안정을 위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 66

훈 령

- 파주시 훈령 제254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81
- 파주시 훈령 제255호 파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 83

고 시

- 파주시 고시 제2019-113호 도로명주소 고시 86
- 파주시 고시 제2019-114호 운정신도시(3지구) A14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87

공 고

- 파주시 공고 제2019-795호 공인 신조 공고 88

회 람									
--------	--	--	--	--	--	--	--	--	--

발 행 : 파 주 시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19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인

2019년 5 월 10일

파주시 조례 제 1494 호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거쳐”를 추가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에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5조제3항 중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를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로 하며, “이 경우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는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옴부즈만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후 추천위원

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읍부즈만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파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지역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읍부즈만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감사관 ☎ 940-5971
입안자	윤희정 의원 대표발의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옴부즈만의 자격 및 임기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중에서</u> 의회의 동의를 거쳐 <u>시장이 위촉한다.</u></p> <p>1.~5. (생략)</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u>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u> 의회의 동의를 거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u>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u>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u>새로이 개시된다.</u></p> <p><u><신 설></u></p>	<p>제5조(옴부즈만의 자격 및 임기 등) ① ----- ----- ----- ----- ----- <u>중 옴부즈만 추천위원회</u> 를 거쳐 -----<u>받아</u> <u>시장이 위촉하며,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u></p> <p>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u> 부터 30일 이내에 ----- ----- <u>하며,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한다. <후단 삭제></u></p> <p><u>제12조의2(옴부즈만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u></p>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읍부즈만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파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지역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읍부즈만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이유

- 시정 감시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주시 옴부즈만의 전문성 있고 공정한 위촉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시하고,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격 요건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옴부즈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을 보완함
(제5조제1항및3항)
- 옴부즈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자격심사를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제12조의 2)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19년 제6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중 환 인

2019년 5 월 10일

파주시 조례 제 1495 호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외하며,”를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세정과 (☎ 940-4211)
입안자	세정과장	성 용 현
	세정팀장	봉 상 균
	담당자	황 미 옥

<신 설>

② 장애인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삭 제>

④ (생략)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그 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현재 조례에 근거 시행 중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지속 및 신뢰보호를 위해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법규의 명확성을 위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의 제목 변경(제2조제1항)
 - 감면 대상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의 정의를 추가 보완하여 명확히 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제2조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18.12.31. 일부·타법개정)으로 대체취득 기간별 감면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인 제2조제3항 삭제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18.12.24.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하던 감면율을 '21년도부터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의한 감면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 감면 적용시한 연장(부칙 제2조)
 - 「과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감면사항의 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시행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19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인

2019년 5 월 10일

파주시 조례 제 1496 호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반장의 임무와 복무”를 “반장의 위촉·임무·복무”로 한다

제2조 “반장의 선임·등록”을 “반장의 위촉 및 보고”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여 당해 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통·리장이 사전에 해당 반 주민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반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반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였을 때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6.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리장은 반장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반장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 940-4961
입안자	윤희정 의원 대표발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반장의 선임·등록) ①----- -----</p> <p>②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여 당해 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리장의 추천과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반장 선출은 재적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장의 위촉·임무·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반장의 위촉 및 보고) ① ----- -----</p> <p>②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여 당해 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통·리장이 사전에 해당 반 주민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반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였을 때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

<신 설>

제3조(임무)-----

1. ~ 8. 생략

<신 설>

제4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당해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당해 통·리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운번제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통·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을 때

6.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④ 통·리장은 반장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1. ~ 8. 생략

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를 제공한다.
2. 반상회에서 국가시책 또는 시국 관에 관한 좌담을 주도한다.
3. 반상회의 날에는 통·리·반장과 함께 반원집을 순방하여 반상회 참석을 권유한다.
4. 반원의 요망사항을 집약·조정하고 대변한다.
5. 반장의 활동에 지원역을 담당한다.
6. 행정시책의 홍보요원으로 활동한다.

□ 개정이유

- 현행 운영 중인 반장에 대하여 통·리장이 위촉 후 읍·면·동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반장제를 운영하고, 반장의 임무에 지역의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반장을 통·리장이 위촉 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함 (제2조)
- 반장의 임무에 지역 내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정함 (제3조)
- 실제 운영하지 않는 명예반장 삭제 (제4조)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19년 제6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인

2019년 5 월 10일

파주시 조례 제 1497 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15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를 둔다.

제15조의2(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스마트농업과를 둔다.

제18조의2(환경수도사업단에 두는 과) 환경수도사업단에 환경보전과, 환경시설과, 공원 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도시경관과를 둔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34명”을 “1,52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12명”을 “1,50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2명”을 “23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 940-4123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김 영 준
	인 사 팀 장	양 성 원
	담 당 자	이 종 호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27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26	1,526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482	1,482					
3급	1	1					
4급	11	7	1	2	1		
5급	79	36	2	12	12	1	16
6급 이하 소계	1,390	1,390					
전문경력관 소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사	4	4					
지도직 계	36	36					
지도관	-	-	-	-	-	-	-
지도사	36	36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계	3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2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u>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를 둔다.</p>
<p><신 설></p>	<p><u>제15조의2(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u>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스마트농업과를 둔다.</p>
<p><신 설></p>	<p><u>제18조의2(환경수도사업단에 두는 과)</u> 환경수도사업단에 환경보건과, 환경시설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도시경관과를 둔다.</p>
<p>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u>1,434명</u>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12명</u></p> <p>2. 의회사무국의 정원 : <u>22명</u></p>	<p>제25조(정원의 총수) ----- ----- <u>1,526명</u>----- -----.</p> <p>1. ----- : <u>1,503명</u></p> <p>2. ----- : <u>23명</u></p>

□ 개정이유

- 민선7기 역점사업, 신규·강화사업 등의 조직 및 인력보강을 위하여 '19년 기준 인건비를 반영한 파주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 직속기관·사업소는 현재 사무만 분장되어 있으나 하부행정기관인 과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직속기관·사업소의 과를 지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에 각 하부행정기관인 과를 지정 (제12조의2, 제15조의2, 제18조의2)
- 격무부서 충원 및 지역현안사업 시행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1,434명에서 1,526명으로 92명 증원 (제25조 및 별표 4)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19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인

2019년 5 월 10일

파주시 조례 제 1498 호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를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제공하는 청년지원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임기 중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

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

라.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정책과 ☎ 940-4554
입안자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과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u></p>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청년활동공간”이란 청년에게 필요한 스터디룸, 창작 및 휴게실, 세미나실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말한다.</p> <p>제5조(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시장은 <u>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u> 임기 중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u>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u></p> <p><u>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u></p> <p><u>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u></p> <p><u>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향상</u></p> <p><u>마. 청년의 생활안정</u></p> <p><u>바. 청년문화의 활성화</u></p> <p><u>사. 청년의 권리 보호</u></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u>과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제공하는 청년지원센터</u>-----.</p> <p>제5조(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 <u>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u> 임기 중에-----.</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u>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u></p> <p><u>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u></p> <p><u>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u></p>

현 행	개 정 안
<p><u>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u></p> <p>3. (생 략)</p> <p>4. (생 략)</p> <p>③ (생 략)</p>	<p><u>라.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 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u></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개정이유

- 타 조례와 유사·중복된 내용을 개정하고, 청년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청년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변경
 -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를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구체화(제5조)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19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인

2019년 5월 10일

파주시 조례 제 1499 호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등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청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파주시 청년위원회

제7조(청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

시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복지·고용·주거·문화 업무 담당 부서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인 회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5. 청년정책 관련 기관·단체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 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에는 청년과 특정 성별의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수에 비례하여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3장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 등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 ① 시장은 취업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한 청년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의 기반 및 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시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생활 안정과 의료보장 지원)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권리 보호)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시설

제20조(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파주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지원센터를 시가 설립한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과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정책과 ☎ 940-4554
입안자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 제정이유

- 파주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제1조~제3조)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5조~제6조)
- 청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제11조)
-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지원·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제12조~제19조)
-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제20조~제21조)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19년 제6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인

2019년 5 월 10일

파주시 조례 제 1500 호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파주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규정하므로써”를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업자”라 함은 시내에서 물품을 제조”를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로 하고, “이하같다)·반입”을 “이하 같다)·수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를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 중 “향유한다”를 “가진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입장소”를 “구입 장소”로 한다.

제8조 중 “상거래질서확립”을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는때”를 “하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고 상담실장과 전문상담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그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지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법등”을 “방법 등”으로 한

다.

제12조의 제목“(시험.검사의뢰 및 시설조치)”를“(시험·검사의뢰 및 시설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시험, 검사”를“시험·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시험, 검사할”을“시험·검사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아니된다”를“아니 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아니된다”를“아니 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아니된다”를“아니 된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을“(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생명,신체”를“생명, 신체”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기한내”를“기한 내”로 한다.

제24조 중“것중 당사자간”을“것 중 당사자 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한국소비자보호원”을“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비자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자료의 제공

2. 「과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7조에 의한 법률자문

제29조제2항 중“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5”를“소비자기본법 제17조의3”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소비자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사용료.수수료”를“사용료·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상.하수도”를“상·하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요금중”을“요금 중”으로, “인상율이 당해연도”를“인상률이 당해 연도”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가름”을 “갈음”으로 한다.

제35조 중 “관계되는자”를 “관계되는 자”로 한다.

제37조 중 “관련중앙행정기관”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지역공동체과 ☎ 940-4523
입 안 자	지역공동체과장	신 동 주
	지역경제팀장	김 지 숙
	담 당 자	유 미 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과주시 소비자보호 조례</u></p>	<p><u>과주시 소비자기본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주시(이하 “시”라한다)와 사 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u>규정하므로써</u>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 ----- <u>규정함으로써</u> ----- ----- ----- -----.</p>
<p>제2조(정의) (생 략)</p> <p>1. “<u>사업자</u>”라 함은 시내에서 물 <u>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u> <u>함한다. 이하같다)·반입·판</u> <u>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u> <u>를 말한다.</u></p> <p>2.“<u>소비자</u>”라 함은 사업자가 제 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u>최종적으로 사</u> <u>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u> <u>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u> <u>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u>사업자</u>”라 함은 물품을 제조 ----- --. <u>이하 같다)·수입</u>----- ----- --.</p> <p>2. ----- ----- <u>또는</u> ----- ----- <u>사용(이용을 포</u> <u>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u> <u>는 생산활동을 위하여</u> ---- -----.</p>

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생략)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2. (생략)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 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 7. (생략)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 및 감시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 하는때에는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단서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 가진다.

1.·2. (현행과 같음)

3. -----

구입 장소-----

4. ~ 7. (현행과 같음)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

----- 상거래 질서
확립-----.

제10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는 때-----
-----.

③ -----

상담실의 유급상담원은 상담실장 1인과 4인 이내의 전문상담원으로 하고 상담실장과 전문상담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그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등은 「과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2조(시험·검사의뢰 및 시설조치)

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 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 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 검사기관으로

---- 한다.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지원이 -----

-----.

② -----
----- 방법 등 -----

-----.

제12조(시험·검사의뢰 및 시설조치)

① -----

- 시험·검사-----

--.

② -----

-- 시험·검사할 -----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
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8
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
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②·③ (생략)

제16조(계량의 적정화) ① 사업자
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
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
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제17조(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
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제18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생략)

-----.

제13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 아니 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계량의 적정화) ① -----

-----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 -----

-----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현행과 같음)

제20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서신, 방문, 전화, 전신, 그 밖에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제20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

----- 생명,
신체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

----- 기한
내-----

-----.

제24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

----- 것 중 당사자 간

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31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략)

<신설>

제3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4. (생략)
- 5.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 6. 시 관여 공공요금중 상.하수도요금의 조정
- 7. ~ 9. (생략)

② 삭제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조정대상 요금중 1년이 경과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의 경우와 정보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현행과 같음)

제7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제31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회의 기능)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사용료 · 수수료 -----
- 6. ----- 상 · 하수도 -----
- 7. ~ 9. (현행과 같음)

③ -----
-- 요금 중 ----- 인상률이 당해 연도 -----

-----.

제33조(회의) ①(생략)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 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가름 할 수 있다.

제35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5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3조(회의) ①(현행과 같음)

-----같음
-----.

제35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

----- 관계되는 자-----

-----.

제37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 관
련 중앙행정기관-----

-----.

□ 개정이유

- 『소비자』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및 소비자 소송지원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명과 기관명칭변경
 - 『과주시 소비자보호조례』를 『과주시 소비자기본조례』로 조례명을 변경
 -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 변경(제25조)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명칭변경
- “소비자”와 “사업자”의 정의 포괄적 개념규정(제2조)
-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의 상담실장과 전문상담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그 보수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과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함. (제10조, 제11조)
- 소비자 소송의 지원의 법률자문 등 지원방안을 구체화함(제26조)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반영하여 위촉사항 신설
- 기존조례 형식적 미비점 보완 : 띄어쓰기 등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19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인

2019년 5 월 10일

파주시 조례 제 1501 호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에 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 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 940-8404
입안자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 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제2조)
-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제4조)
-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9조)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19년 제6·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중 환 인

2019년 5 월 10일

파주시 조례 제 1502 호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되거나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속으로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파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
4. 지하안전 기술
5. 10m미만의 도로굴착 및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
 3. 파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
 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시장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 940-5703
입안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진 영
	지하안전관리팀장	이 수 환
	담 당 자	신 석 하

□ 제정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되거나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제2조)
- 위원회의 기능(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4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2019년 제6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인

2019년 5 월 10일

파주시 규칙 제 657 호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

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감사관 ☎ 940-4042
입안자	감사관	윤 정 기
	조사팀장	김 태 훈
	담당자	이 창 원

■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 <개정 2019.2.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생략) <u><신 설></u></p>	<p>제13조의2(현행과 같음) <u>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 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 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 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 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u> 2. <u>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 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u> 3. <u>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 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 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 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u> 4. <u>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u>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생략)
<신설>

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이유

- 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9430호, 2018. 12. 24.시행)이 개정(2개조 신설)됨에 따라 「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부패발생 예방 및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주요골자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3조의3)
 - 인가·허가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금지
 -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4조의2)
 -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독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 감독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공직자가 사용하는 신고 서식 마련

2019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인

2019년 5월 10일

파주시 규칙 제 658 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총무과 ☎ 940-4123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김 영 준
	인사팀장	양 성 원
	담당자	이 종 호

□ 개정이유

- 민선7기 역점사업, 신규·강화사업 등의 조직 및 인력보강을 위하여 '19년 기준 인건비를 반영한 파주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분장사무, 직급·직렬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개정에 따라 본청 과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을 정함
(별표 1, 별표 2, 별표 3)
- 부서별 사무분장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변경함(별표 6, 별표 7)

2019년 제6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물가안정을 위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중 환 인

2019년 5 월 10일

파주시 규칙 제 659 호

파주시 물가안정을 위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주시 물가안정을 위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를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로, “검사권한(이하“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을 “검사권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령제25조에 의거”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로, “통계법에 의한”을 “「통계법」에 따른”으로, “표준산업분류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제1호가목 중 “3회이상”을 “3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율

인하후 재차”를 “자율인하 후 다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가격”을 “가격이 다른 업소”로, “지역물가를”을 “지역물가의 인상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경우등”을 “경우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 중 “자료제출명령후”를 “자료제출 명령 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또는 자료가 허위임”을 “및 자료가 거짓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시장”을 “과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발부일로”를 “발급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부여하여”를 “주어”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득한 후 검사에 임”을 “받은 후 검사를 실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인서를 받아”로 하고, “징구하지”를 “받지”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해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3”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칙)”을 “(관계공무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 법령내용”을 “사전에 법령의 내용”으로 한다.

별표 1, 2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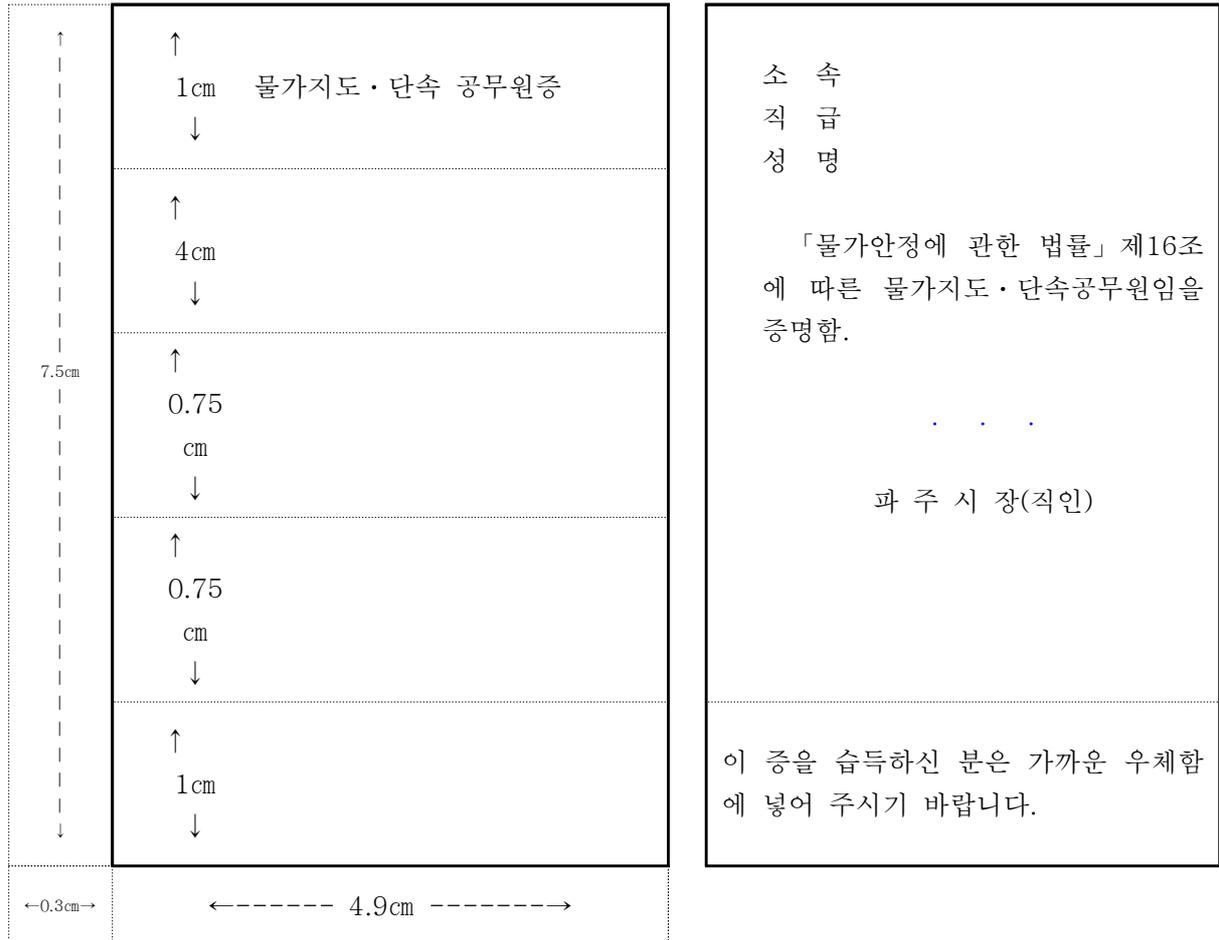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지역공동체과 ☎ 940-4523
입 안 자	지역공동체과장	신 동 주
	지역경제팀장	김 지 숙
	담 당 자	유 미 령

[별표 3]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11조 관련)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g/m²로 한다.
-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 고 자 료

수 신 : 파주시장

20

참 조 :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격변동내역

품 목	전년말가격	현재가격	변동율	변동일자	비 고

가격변동사유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수 입 액 (천원)			지 출 액 (천원)		
항 목 별	금 액	세부내역	항 목 별	금 액	세부내역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기타 관련증빙자료

보 고 (자료제출) 독 촉 장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관련문서번호			당초제출기한		
보고(자료제출) 요 구 내 용					
<p>○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파주시청 0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파 주 시 장</p>					

[별지 제4호서식]

자 인 서

시 설 명(업소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파주시장의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명령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1.

2.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재		공무원증 번호	발급 년월일	소속 및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신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 유	일시 회수	반환	사 진	
과 장	담 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대상업종) ① <u>령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u></p> <p>② <u>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u></p> <p>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① <u>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u></p>	<p>제1조(목적) -- <u>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u> ----- ----- ----- <u>검사권한</u>----- ----- ----- ----- -----.</p> <p>제2조(대상업종) ① <u>「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정한다.</u></p> <p><u><삭 제></u></p> <p>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u>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u></p>

1. (생략)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여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등

2. (생략)

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생략)

1. (생략)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

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가. ----- 3회 이상-----

나. 자율인하 후 다시 -----
다. ----- 가격이 다른 업소----- 지역물가의 인상을-----

라. -----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경우 등

2. (현행과 같음)

가. 자료제출 명령 후 -----

나. ----- 및 자료가 거짓임-----

다. 그밖에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과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간을 명시한 문서로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생략)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입하여야 한다.

나. (생략)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
-- 발급일-----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
-----.

다. -----

----- 주어 -----
----- 발급하
여야 -----
----- 한정한다.

2. (현행과 같음)

가. -----

----- 받은 후 검사를 실
시-----.

나. (현행과 같음)

다. -----
-- 따른 -----

----- 경기도지사-----
-----.

제5조(과태료 부과) 법제29조 및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신 설>

제6조(의견제출) ① 시장은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제출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삭 제>

제7조(자인서징구) -----

----- 별
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인서를
받아 -----

----- 받지 -----

-----.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

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
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8호 서
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
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
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일이내
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
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
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9조(이의신청) ① 법제29조 제3항

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
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과

<삭 제>

<삭 제>

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부과권자가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삭 제>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
-----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별표 3-

-----.

② -----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
-----.

제12조(관계공무원의 준수사항) ①

----- 사전에 법령의 내용-----
-----.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과태료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나,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자치법규에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 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제1조)
-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칙에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과태료를 과도하게 부과한 규정을 삭제함.(제5조 및 별표 1, 별표 2 삭제)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제6조 삭제, 제8조~제10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변경,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정비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인

2019년 5월 10일

파주시 훈령 제 254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치행정과 ☎ 940-4123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김 영 준
	인 사 팀 장	양 성 원
	담 당 자	이 종 호

개정이유

-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조정함

주요골자

- 부서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파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인

2019년 5월 10일

파주시 훈령 제 255 호

파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

파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파주시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시의 지분 50퍼센트 미만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별표의 4호 그 밖의 업무의 대상업무 및 기준란의 가목 중 “출자·출연기관”을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감사관 ☎ 940-4080
입안자	감사관	윤정기
	기술감사팀장	박기홍
	담당자	송창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집행부서”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p> <p>가. ~ 라.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p> <p>-----</p> <p>-----</p> <p>-----.</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u>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파주시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시의 지분 50퍼센트 미만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제외한다)</u></p>

개정이유

-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을 일상감사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파주시 일상감사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일상감사 대상기관에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단, 시의 지분 50퍼센트 미만 출자·출연 기관은 제외) (제2조제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10.

파주시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007-7 (연다산동) 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940-489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운정신도시(3지구) A14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대우건설(대표이사 김형)이 신청한 운정신도시(3지구) A14블럭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10.

파 주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업 주 체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김형	좌 동
사 업 위 치	운정신도시(3지구) A14블럭	좌 동
대지면적(m ²)	41,435.00m ²	좌 동
건축면적(m ²)	5,050.98m ²	좌 동
연 면 적(m ²)	108,518.05m ²	좌 동
건 축 규 모	공동주택 7개동, 지하2층~지상28층, 710세대	좌 동
사 업 기 간	2018. 12. 1. ~ 2021. 12. 15.	2019. 4. 12. ~ 2021. 12. 31.
변 경 내 용	- 사업기간 변경	

2.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3. 기타 :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보이게 합니다. 끝.

공 고

파주시 공인조례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동조례 제10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인명	신조사유	사용관리부서 (관수자)	신조일	비고
제증명운정3동장인전용(2)	운정3동 출장민원실 운영	정 : 운정3동장 부 : 총무팀장	2019. 5. 13.	
민원사무운정3동장인통합증명전용(7) (가로형)	운정3동 출장민원실 운영	정 : 운정3동장 부 : 총무팀장	2019. 5. 13.	
민원사무운정3동장인통합증명전용(7) (세로형)	운정3동 출장민원실 운영	정 : 운정3동장 부 : 총무팀장	2019. 5. 13.	
민원사무파주시장인운정3동통합증명전 용(7) (가로형)	운정3동 출장민원실 운영	정 : 운정3동장 부 : 총무팀장	2019. 5. 13.	
민원사무파주시장인운정3동통합증명전 용(7) (세로형)	운정3동 출장민원실 운영	정 : 운정3동장 부 : 총무팀장	2019. 5. 13.	
민원사무운정3동장인통합증명전용(8) (가로형)	운정3동 출장민원실 운영	정 : 운정3동장 부 : 총무팀장	2019. 5. 13.	
민원사무운정3동장인통합증명전용(8) (세로형)	운정3동 출장민원실 운영	정 : 운정3동장 부 : 총무팀장	2019. 5. 13.	

공인명	신조사유	사용관리부서 (관수자)	신조일	비고
민원사무과주시장인운정3동통합증명전용(8) (가로형)	운정3동 출장민원실 운영	정 : 운정3동장 부 : 총무팀장	2019. 5. 13.	
민원사무과주시장인운정3동통합증명전용(8) (세로형)	운정3동 출장민원실 운영	정 : 운정3동장 부 : 총무팀장	2019. 5. 13.	
민원사무운정3동장인통합증명전용(9) (가로형)	운정3동 출장민원실 운영	정 : 운정3동장 부 : 총무팀장	2019. 5. 13.	
민원사무운정3동장인통합증명전용(9) (세로형)	운정3동 출장민원실 운영	정 : 운정3동장 부 : 총무팀장	2019. 5. 13.	
민원사무과주시장인운정3동통합증명전용(9) (가로형)	운정3동 출장민원실 운영	정 : 운정3동장 부 : 총무팀장	2019. 5. 13.	
민원사무과주시장인운정3동통합증명전용(9) (세로형)	운정3동 출장민원실 운영	정 : 운정3동장 부 : 총무팀장	2019. 5. 13.	
민원사무운정3동장인전용(2)	운정3동 출장민원실 운영	정 : 운정3동장 부 : 총무팀장	2019. 5. 13.	

2019년 5월 10일

파 주 시 장

공 인 의 모 형

1. 공인신조명 : 제증명운정3동장인전용(2) 등 14개
2. 공인 신조사유 : 운정3동 출장민원실 운영
3. 공인의 사용일 : 2019. 5. 13.
4. 신조 공인명 및 인영

신 조 공 인			관리부서
공 인 명	인 영	규 격(cm)	
제증명운정3동장인전용(2)		2.1 x 2.1	운정3동
민원사무운정3동장인통합증명전용(7) (가로형)		2.1 x 2.1	운정3동
민원사무운정3동장인통합증명전용(7) (세로형)		2.1 x 2.1	운정3동
민원사무과주시장인운정3동통합증명 전용(7) (가로형)		2.4 x 2.4	운정3동
민원사무과주시장인운정3동통합증명 전용(7) (세로형)		2.4 x 2.4	운정3동
민원사무운정3동장인통합증명전용(8) (가로형)		2.1 x 2.1	운정3동

신 조 공 인			관리부서
공 인 명	인 영	규 격(cm)	
민원사무운정3동장인통합증명전용(8) (세로형)		2.1 x 2.1	운정3동
민원사무과주시장인운정3동통합증명 전용(8) (가로형)		2.4 x 2.4	운정3동
민원사무과주시장인운정3동통합증명 전용(8) (세로형)		2.4 x 2.4	운정3동
민원사무운정3동장인통합증명전용(9) (가로형)		2.1 x 2.1	운정3동
민원사무운정3동장인통합증명전용(9) (세로형)		2.1 x 2.1	운정3동
민원사무과주시장인운정3동통합증명 전용(9) (가로형)		2.4 x 2.4	운정3동
민원사무과주시장인운정3동통합증명 전용(9) (세로형)		2.4 x 2.4	운정3동
민원사무운정3동장인전용(2)		2.1 x 2.1	운정3동